

대신대학교 강의평가 규정

제1조(목적) 본 강의평가의 목적은 학업성취도 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, 이를 통해 교수강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평가항목) 평가항목은 기초평가, 강의내용 및 진행, 종합평가의 세 분야로 나뉘며, 전체 12항목으로 구성하고 각 항목은 5단계 등급으로 평가한다. 단, 강의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평가 항목은 변경할 수 있다.(개정 2022.03.14.)

제3조(평가대상) 평가대상 교과목은 매학기에 개설된 전체 강좌를 대상으로 한다. 단,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평가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평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

제4조(평가주기) ① 평가주기는 매학기 2회(중간,기말)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(개정 2022.03.14.)
② 중간평가를 실시할 경우 중간평가결과는 교과목 담당 교원의 자가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학기말 평가결과를 강의평가결과로 산정한다.(신설 2022.03.14.)

제5조(평가점수) ① 평가항목별 A는 5점, B는 4점, C는 3점, D는 2점, E는 1점으로 하여 얻은 취득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한다.
② 강의평가를 받지 아니한 과목에 대하여는 평가점수 산출시 제외한다.

제6조(평가절차) ① 삭제(2023.08.01.)
② 평가결과는 해당과목의 학과장 및 피평가자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의 자료열람 요구가 있을 시는 열람할 수도 있다.

제6조의 2(강의평가관리위원회) ① 강의평가 항목 개발, 결과 활용 및 기타 강의평가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의평가관리위원회를 둔다,(신설 2022.03.14.)
②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경우 교육과정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.(신설 2022.03.14.)
③ 교무처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으로 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.(신설 2022.03.14.)

제7조(결과활용) ① 강의평가 설문항목의 평가결과를 전임교원은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고 **강사 및 비전임교원은** 환산 평가점수가 7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 강의에 반영토록 한다.
(개정2023.08.01.)

② 평가결과를 근거로 수강생의 제안 및 건의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한다.
③ 강의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(전임, 비전임, 강사 포함)에 대하여는 수강인원 고려하여 인원 규모별로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강의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.(신설 2022.03.14.)
④ 강의평가 교과목 평균 70점 미만이거나 2회연속 70점 미만인 과목이 있는 전임교원은 승진 및 연구년제 선발대상에서 제외하며, 동일 교과목 강의평가 결과가 해당 학기 2년 연속해서 70점 미만인 경우 1년 동안 동일과목에 대한 강의를 제한한다.(신설 2022.03.14.)
⑤ 강의평가 결과가 **평균 70점** 미만인 교과목 담당 강사는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수역량 향상 지원 프로그램이 개설될 경우 1회이상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2회 불참시에는 재임용 심사시 정성평가 심사항목에서 최하점이 반영된다. (신설 2022.03.14., 개정 2023.08.01.)
⑥ 강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업개선계획(CQI)을 수립하고 다음 학기 수업에 반영하여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.(신설 2022.03.14., 개정 2023.08.01.)

⑦ 강의평가결과는 강의평가관리위원회를 통해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한다.(2022.3.14. 신설)

제7조의2(강의평가결과 공개) ① 강의평가 결과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(신설 2023.08.01.)

1. 공개대상: 강의평가 대상 전체 강좌

2. 공개범위: 대학의 강좌별 강의평가 점수

3. 공개기간: 강의평가 종료 후 1년간

② 강의평가를 공개할 때 수강인원, 평가참여인원, 강의평가 점수 등을 포함하여 공개할 수 있다.(신설 2023.08.01.)

제8조(비밀유지) 평가업무에 참여한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안된다.

제9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